



#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선 람	기관의 장

제16호 2019. 5. 3(금)

## 조례

- 남원시 조례 제1493호 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 남원시 조례 제1494호 남원다움 근.현대기록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6
- 남원시 조례 제1495호 남원시 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13
- 남원시 조례 제1496호 남원시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21
- 남원시 조례 제1497호 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27
- 남원시 조례 제1498호 남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 31
- 남원시 조례 제1499호 남원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34
- 남원시 조례 제1500호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37
- 남원시 조례 제1501호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40
- 남원시 조례 제1502호 남원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 -----60
- 남원시 조례 제1503호 남원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61
- 남원시 조례 제1504호 남원시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67

## 훈령

- 남원시 훈령 제401호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 규정 일부개정규정 ----- 77

## 고시

- 남원시 고시 제2019-53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고시 ----- 81
- 남원시 고시 제2019-55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고시 ----- 82
- 남원시 고시 제2019-56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고시 ----- 83

## 공고

- 남원시 공고 제2019-861호 남원시 대학생 학자금 이차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82
- 남원시 공고 제2019-902호 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 세분 및 최고고도지구) 변경 결정“안”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 90

회 람																			
--------	--	--	--	--	--	--	--	--	--	--	--	--	--	--	--	--	--	--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이에 공포한다.

## 남 원 시 장

직인

2019년 05월 03일

남원시 조례 1493 호

### 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남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 「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출생축하금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전입 축하금과 전입 이사비 지급방법은 2019년 5월 1일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 인구늘리기 사업별 세부지원 기준(제4조 관련)

사 업 명	적용기준	지원대상 및 내용	비고
1.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4조 제1항제1호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li> </ul>	
2. 전입 장려 지원	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 전입 일을 기준으로 3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 관내로 전입한 사람</li> <li>○ 지급방법 : 쓰레기봉투 지급 (전입자 1명당 20리터 10매 지급)</li> </ul>	
	나. 전입 축하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 전입 일을 기준으로 3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 관내로 1명 전입한 경우</li> <li>○ 지급방법 : 3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li> </ul>	전입 6개월 이내 신청
	다. 전입 이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 전입 일을 기준으로 3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 관내로 2명 이상이 동시에 전입할 경우</li> <li>○ 지급방법 : 세대당 이사비 20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li> </ul>	전입 6개월 이내 신청
	라. 빈집정보 제공	조례 제4조 제1항제5호 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 홈페이지 게시로 빈집정보를 제공하고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상담 및 안내</li> </ul>



[별지 제2호서식]

##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관리대장(제10조 관련)

○ 신청 사업명 :

연번	신청 일자	전 입 현 황							신 청 현 황				비고
		전입 일자	성명	생년 월일	전 주소	지급 일자	지급 인원	지급액 (원)	전입 대표자와 관계	성명	주 소	연락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지원 대상)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된 출산장려, 전입세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출산장려 지원 : 「남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p>	<p>제3조(지원 대상) ----- ----- ----- -----.</p> <p>1. ----- 「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 ----- -----</p>
<p>제4조(지원내용)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1. 출산장려금</p> <p>2. ~ 6. (생략)</p>	<p>제4조(지원내용) ① ----- ----- ----- ----- -----.</p> <p>1. 출생축하금</p> <p>2. ~ 5. (현행과 같음)</p>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남원다움 근·현대기록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9년 05월 03일

남원시 조례 제 1494 호

남원다움 근·현대기록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다움 근·현대기록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남원다움 근·현대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금동 151 일원에 둔다.

제3조(기능)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남원 근·현대사 기록의 수집·보존 및 전시
- 2. 지역 자료(콘텐츠)의 조사·연구 및 개발
- 3. 그 밖에 기록관 운영에 관한 업무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 1. 1월 1일, 설날과 추석날
-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

른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

3.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할 경우 휴관일 10일전에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관람시간) ① 기록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록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기록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단, 체험형콘텐츠 등에 한정하

여 향후 남원다움 근·현대기록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람료를 책정하여 별도 징수할 수 있다.

제7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 7세 이하의 어린이
2.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제외)
3.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음주 등으로 전시품이나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기록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흡연·음주 및 음식물 반입
-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
- 3. 큰 소리로 떠드는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 4.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남원다움 근·현대기록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기록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남원다움 근·현대기록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기록관 전시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2. 기록관 전시물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3. 기록관의 문화·교육 활동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록관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1.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의 역사·문화·예술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기록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간사)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록관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6조**(남원다움 근·현대기록관 수집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자료구입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남원다움 근·현대기록관 수집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평가위원회 위원은 근·현대자료 평가 및 감정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매회 해당분야 평가 종료 시까지 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물의 역사적·문화적 가치
2. 유물의 구입계획에 관한 사항
3. 유물의 진위 여부 평가 및 평가액 산정
4. 유물의 기증·기탁 등에 대한 감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⑥ 평가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에서 제척된다.

1. 대상자료 등이 평가위원의 소유인 경우
2. 대상자료 등이 평가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유물에 대한 최종 평가는 참여한 위원 모두의 합의로 하고, 유물평가결과 보고서에 각자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감정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유물의 감정을 의뢰

할 수 있다.

**제17조(유물 등의 수집)** ① 시장은 기록관의 전시 및 연구·보존에 필요한 유물 등을 자체 발굴·기증·대여·기탁 등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유물 등을 기증한 경우 기증자에게 기증증서 또는 감사패 등을 줄 수 있다.

**제18조(유물 등의 구입)** 시장은 기록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 등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대상 유물 및 구입가격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유물 및 자료 관리)** ① 시장은 기록관 소장목록 및 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관리·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망실·훼손 또는 도난방지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자료는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장품의 훼손, 도난, 망실 또는 화재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유·무형 소장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수장고 및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기념품)** 시장은 기록관의 홍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기록관 관련 이벤트 응모자와 당첨자
2. 기록관 관련 설문조사 참여자
3. 기록관 추진사업 협력자, 자원봉사자, 실습(인턴)사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1조(위탁 운영) 기록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기록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록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제21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고,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남원시 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9년 05월 03일

남원시 조례 제 1495 호

남원시 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설 혼불과 작가 최명희 선생의 문학정신을 널리 알리고 전승·보존하기 위하여 건립한 남원시 혼불문학관과 남원의 고전 문학사를 정립하여 문학적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하기 위해 건립한 남원고전소설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남원시 혼불문학관은 남원시 사매면 노봉안길 52에 두고, 남원고전소설문학관은 남원시 향단로 10에 둔다.

제3조(기능) 남원시 혼불문학관과 남원고전소설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문학관 자료의 수집·보존·복원·관리·전시 및 활용
- 2. 문학관 자료에 대한 조사·연구 및 간행물의 제작 배포

3. 문학의 대중화를 위한 교육 및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4. 그 밖에 문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제2장 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문학관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문학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기관·단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문학관을 직접 운영할 경우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은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정한다.

**제5조(개관 및 휴관)**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날
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날
4. 임시 휴관일을 지정한 경우 휴관일 10일전까지 남원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관람시간)** ① 문학관의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문학관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① 문학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남원시 문학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단서규정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 관람료 면제 및 할인 대상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관람 및 행위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문학관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만 7세 이하 어린이
3.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고성 등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사람
5. 전시물에 손을 대거나 훼손하는 사람
6. 그 밖에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9조(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은 문학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학관 내·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지역특산물 및 기념품점
2. 편의점, 문학도서 판매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② 시장은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3장 시설의 사용



**제10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문학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 관련 전시행사에 한정하여 법인 및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문학관 시설의 무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문학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미리 사용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별도의 설비를 사용하고 자 할 경우에는 사용신청서에 설비 내용을 기록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손해배상)** 시장은 문학관 관람자 또는 사용자가 시설 및 전시물을 훼손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배상하도록 할 수 있다.

1. 당초 구입 및 설치한 시설물 등의 시중가격
2. 시중가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2개의 공인 감정평가기관에게 의뢰하여 산출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으로 산정한 금액
3. 제2호에 따라 감정 평가금액을 산출하기 곤란하거나 소액인 경우 시장이 정하는 금액

**제13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문학관의 시설을 사용할 때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제4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4조(남원시 문학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문학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문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문학관 운영의 위탁 및 취소 여부에 관한 사항
3. 문학관 전시물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학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학관 업무 담당국장과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문학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출장·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서관 업무 담당으로 하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2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소장품의 수집과 관리

제22조(구입)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학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작품 또는 자료를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구입할 수 있다.

제23조(기증 등) ① 시장은 소장자로부터 소장품의 기증·기탁·관리전환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기증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기증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증품 평가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보관 및 관리) ① 시장은 소장품이 훼손·분실·도난당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장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5조(불용 결정) ① 시장은 소장품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특정 소장품을 소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용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용 결정한 소장품은 매각·양여·교환·이관·폐기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고,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공포와 동시에 「남원시 혼불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9년 05월 03일

남원시 조례 제 1496 호

남원시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7조에 따라 남원시 어린이·청소년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의 독서문화 창달과 평생교육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청소년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란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도서와 자료 등을 소장하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3. “장난감 대여실”이란 장난감을 회원가입자에게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치)** 도서관의 위치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도통동 554-2 일원에 둔다.

**제4조(기능)** 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축적·제공·열람·대출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여
3. 어린이 및 청소년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4.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및 교육
5. 지역의 공공도서관·학교도서관 등 연계협력 구축사업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이용대상 등)** ① 도서관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시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3. 도서관 발전과 독서진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이용시간)**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자료실 : 09:00~18:00
2. 장난감 대여실 : 09:00~18:00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7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② 시장은 도서관 운영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 휴관일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시 및 사유 등을 적어 임시 휴관일 7일전에 시 홈페이지에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임시 휴관을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도서관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한 사람 또는 감염병 환자
2.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열람에 관한 규정 및 주의사항을 위반한 사람
4. 그 밖에 도서관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변상책임)** ① 도서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할 수 있다.

②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자료로 변상하거나 현시가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 기증)** 시장은 개인 및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으며, 도서관의 자료선정 기준에 맞는 자료를 등록·관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자료 대출)**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에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한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자료
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3. 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4. 그 밖에 시장이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12조(문화활동 전개) 시장은 어린이·청소년의 독서문화 창달 및 평생교육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자원봉사자의 활용) ① 도서관 이용자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식대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장난감 대여실 이용) ① 장난감 대여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시에 주소록 둔 만 6세 이하의 영·유아 가정에 한정하며, 장난감 대여실 이용료 및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조례 등에서 정한 이용자의 의무사항이나 이용상 주의사항들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도서관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남원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장난감 대여실 이용 세부기준 (제14조 관련)

## □ 장난감 대여실 이용대상 및 이용시간

이용 대상	이용 시간
시에 주소를 둔 만 6세 이하의 영·유아 가정	· 09 : 00 ~ 18 : 00

## □ 장난감 대여실 이용

회 원 구 분	대 여 수 량	대 여 기 간
일반회원	매회 2점(대형 1점)	7일 (1회 7일 연장 가능)

## □ 회원의 연회비

구 분	연 회 비	비 고
일반회원	10,000원	

## ※ 연회비 면제 대상 (증빙자료 제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부모 또는 아동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다 자녀를 둔 가정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 ○ 연회비 환불 기준

구 분	환불 규정
가입 후 2개월 이내 (이사, 사망 등)	10퍼센트 공제 후 환불
가입 후 4개월 이내	30퍼센트 공제 후 환불
가입 후 4개월이 경과한 경우	환불 불가

## □ 장난감 이용 시 유의사항

1. 장난감 이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은 회원이 구입하여 사용한다.
2. 대여 받은 장난감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3. 장난감 대여 후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4. 장난감 대여기간은 7일 이내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반납 지연 시 지연한 날짜만큼 대여를 할 수 없다.
5. 운영자는 조례 등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사항이나 시설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 □ 책임 및 변상 기준

1. 대여 중 회원이 대여물품의 일부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 : 동일 품목으로 교체하거나, 단종 되어 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대여 중 대여물품 전체를 분실하거나 사용이 불가능하게 파손한 경우 : 회원은 대여물품 구입 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상하여야 한다.

대여자료	구입 시기	변상 금액
장난감	구입 6개월 미만	구매가격의 100% 변상
	구입 6개월 이상 ~ 1년 미만	구매가격의 80% 변상
	구입 1년 이상 ~ 2년 미만	구매가격의 60% 변상
	구입 2년 이상 ~ 3년 미만	구매가격의 40% 변상
	구입 3년 이상	구매가격의 10% 변상

3. 모든 파손과 분실에 대한 보상기한은 7일 이내로 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9년 05월 03일

남원시 조례 제 1497 호

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남원예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옥생활체험에 맞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 별도의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남원예촌 사용료 기준(제8조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면적(m <sup>2</sup> )	정원/최대	객실수	사용료 (원)	비 고
20.5~21.0	2인	5	200,000	1. 요금은 1일 사용시간 20시간 기준 2. 입실 당일 15:00, 퇴실 익일 11:00 기준(단 1일 사용 시간인 20시간미만 사용하더라도 1일 사용료 적용) 3. 추가 침구류 주문 시 1세트 당 40,000원의 추가 요금 적용, 최대인원 초과 시 입실 불가 4. 객실별 구들 체험비 포함 5. 퇴실시간 초과 시 사용료 - 12:00까지 10,000원(1시간만 추가 사용 가능), 15:00이후 퇴실 시 1박 사용료 적용
25.2~29.1	2인/3인	7	250,000	
37.75~44.15	3인/4인	8	300,000	
58.75	4인/6인	2	400,000	
95.35	4인/6인	1	700,000	
131.85		1	800,000	

2. 부대시설 사용료

가. 사랑마루 대관

구 분 시설명		사 용 료 (원)		
		4시간 기준	8시간 기준	12시간 기준
사랑 마루	대관	400,000	700,000	1,000,000
비 고		1. 4시간 기준 : 4시간 이하 이용 시 적용 2. 8시간 기준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이용 시 적용 3. 12시간 기준 : 8시간 초과 12시간 이하 이용 시 적용 4. 숙박객은 사용료 10% 감면 5. 대관은 음향, 영상, 냉난방 시설 등 포함		

나. 사랑마루 한식 체험료

구 분 시설명		체험료(원) /1인 기준				
		조반체험 (7찬)		반상체험 (7찬)	월매 한상체험 (일반형)	춘향 한상체험 (고급형)
		일반형 조 반	숙박용 조 반			
사랑 마루	한식 체험	18,000	15,000	25,000	45,000	55,000
비 고		1. 일반형 조반 : 숙박 체험객 전용 아침 상차림 2. 숙박용 조반 : 숙박 체험객이 사전 예약한 경우 적용되는 아침 상차림 3. 반 상 : 숙박체험 및 대관이용객 전용 행사용 반상차림(7찬) 4. 월매 한상 : 숙박체험 및 대관이용객 전용 한상체험(일반형) 5. 춘향 한상 : 숙박체험 및 대관이용객 전용 한상체험(고급형)				

다. 그 밖에 한옥생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 별도 재료비를 징수할 수 있음.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제8조(사용료 등) ①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위탁운영 시 사용료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별도 협약서에 따른다.</p> <p><u>&lt;신 설&gt;</u></p> <p>②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8조(사용료 등) ① ----- ----- ----- -----</p> <p><u>② 시장은 남원예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옥생활체험에 맞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 별도의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u></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9년 05월 03일

남원시 조례 제 1498 호

남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8조”를 “제8조,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 및 제9조”로 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 제2항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남원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원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제8조,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 및 제9조 ----- -----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6. (생략)</p> <p>&lt;신설&gt;</p>	<p>제2조(정의)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스포츠클럽</u>”이란 <u>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u></p>
<p>제4조(체육의 진흥 및 보조금 지원) ① (생략)</p> <p>②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조직 활동과 생활체육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7. (생략)</p> <p>&lt;신설&gt;</p>	<p>제4조(체육의 진흥 및 보조금 지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u>」</p>

<p>8. (생략)</p>	<p><u>제4조에 따른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9. (현행 제8호와 같음)</p>
----------------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9년 05월 03일

남원시 조례 제 1499 호

남원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장이 추가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할인 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상품권 할인 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간 50만원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월간 100만원 범위에서 상품권 할인구매 한도액을 조정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상품권 구입 및 할인·수수료) ①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 <u>다만, 상품권 할인 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간 50만원, 연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가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제11조(상품권 구입 및 할인·수수료) ① ----- ----- ----- ----- ----- --. <u>다만, 시장이 추가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할인 할 수 있다.</u></p> <p><u>② 상품권 할인 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간 50만원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월간 100만원 범위에서 상품권 할인가매 한도액을 조정하여 판매할 수 있다.</u></p> <p><u>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u></p>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략)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9년 05월 03일

남원시 조례 제 1500 호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업체 제11조 제1항 중 “한도액은 3억원으로”를 “용자한도액은 업체별 총 5억원 이내로 하되, 운전자금은 3억원, 시설자금은 5억원 이내로”로 한다.

제1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용자금 상환은 운전자금의 경우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하고, 시설자금은 3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9년 05월 03일

남원시 조례 제 1501 호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①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 부 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 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 ③ 부단장·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 ④ 단원의 참가자격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 등으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른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 ⑤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 ⑥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원은 시 방재단원이 되며, 시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 ⑦ 읍·면·동 방재단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면·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제3조(임원 및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 ② 단장은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 ⑤ 대표는 해당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 ⑥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 할 수 있다.

-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단장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역자율방재 협의회를 통해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단원이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5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남원시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대표, 방재전문가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④ 협의회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단원의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단장이 소집한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 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과약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활동전개 등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면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7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소

집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시 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시 재난안전상황실의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단원이 합동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 위원용으로 개설된 080 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 단장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

위를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요청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활동 관련 물품, 방재장비의 임차 및 구입비용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 ⑨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에 따른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⑩ 제8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른다.

**제9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0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

**제11조(교육)**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의 방재훈련에 참여한 경우에는 시에서 자체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①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이 있을 경우 사용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재해보상 등)** ① 재해보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1. 요양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 해당 단원의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 에 따르되,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 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지급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인은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⑤ 시장은 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사실 조사를 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의사 상사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등을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방재단은 이 조례에 따라구성된 것으로 본다.



[별표]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 (제15조제2항 관련)

보상등급	보상금 결정 기준		비고
요양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5년분		
장제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3월분		
유족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10년분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	제1급	유족보상금의 100/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따른다.
	제2급	유족보상금의 88/100	
	제3급	유족보상금의 76/100	
	제4급	유족보상금의 64/100	
	제5급	유족보상금의 52/100	
	제6급	유족보상금의 40/100	
	제7급	유족보상금의 20/100	
	제8급	유족보상금의 10/100	
	제9급	유족보상금의 5/100	

비고

1. 요양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치료비·수술비·약제비·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둘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제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위촉장

주소 :

성명 :

귀하를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장으로  
임명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별지 제2호서식]

##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등록번호

호 : \_\_\_\_\_

성명	○○○ (성별)	연령		혈액형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자격증 또는 기능		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난 현장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희망 활동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상기 본인은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 ○ ○ ○ (서명 또는 인)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등록

번호 : \_\_\_\_\_

단 체 명			대 표 자	○○○ (휴대전화)	
주 소				대표전화	
담 당 자	○○○ (휴대전화)		부서명		
인 원	남 ○○명	여 ○○명	총인원	○○명	
장 비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지원가능	남 ○○명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여 ○○명				
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활동희망분야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p>[특이사항]</p> <p>([별지 제4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p>					

상기 본 단체는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붙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 ○ ○ ○ (서명 또는 인)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 활 동 확 인 서(예시)

성 명	(서명 또는 인)	등록번호	
활동내용	사 유	※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방 법	※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시 간	○○○○년○○월○○일 부터 ~ ○○○○년○○월○○일 까지 (○○시간)	
	장 소	※ ○○읍·면·동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내 용	※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	직위	○○읍(면동)대표	성 명 (서명 또는 인)

본인은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단원으로서 상기와 같이 활동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 확인자는 읍면동의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별지 제6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록 번호	성 명	활 동 상 황		비 고
		횃 수	시 간	
1				
2				
3				
⋮				

## ※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를 기록
- 단체의 경우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번호와 [별지 제4호서식]의 연  
번을 붙여서 기록 [(예) 10-1]

## ※ 횃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한글이나 EXCEL등으로 관리

## ※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 ※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방재단 사무실에 제출

[별지 제7호서식]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월별	주요내용	비고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 세부사항은 별도 붙임 가능

※ 남원시의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별지 제8호서식]

## 출 입 증

<b>출 입 증</b>
<p>사 진 (3×4cm)</p>
<b>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b>

← 5.5cm →

<b>지역자율방재단원증</b>	
NO. 000                      혈액형 O(RH+)형	↑
성 명 : ○ ○ ○	
생년월일 :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 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7 cm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
남 원 시 장 (인)	
<u>바탕 배경에 시 상징(휘장) 삽입</u>	

[별지 제9호서식]

## 요양 [ ], 장애 [ ], 장제 [ ], 유족 [ ] 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고자	소속	전화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고자와의 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	사고(사망)일시	
	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1. 화재 [ ] 2. 구조 [ ] 3. 구급 [ ] 4. 기타 [ ]	
	요양(진단)병원	요양(진단)부위
	요양(진단)결과	요양기간
청구금액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청구금액 : ( 은행 , 계좌번호 : )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

(뒤쪽)

제출서류	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확인으로 대체함) ⑧ 보상금 지급관련 요청서류(필요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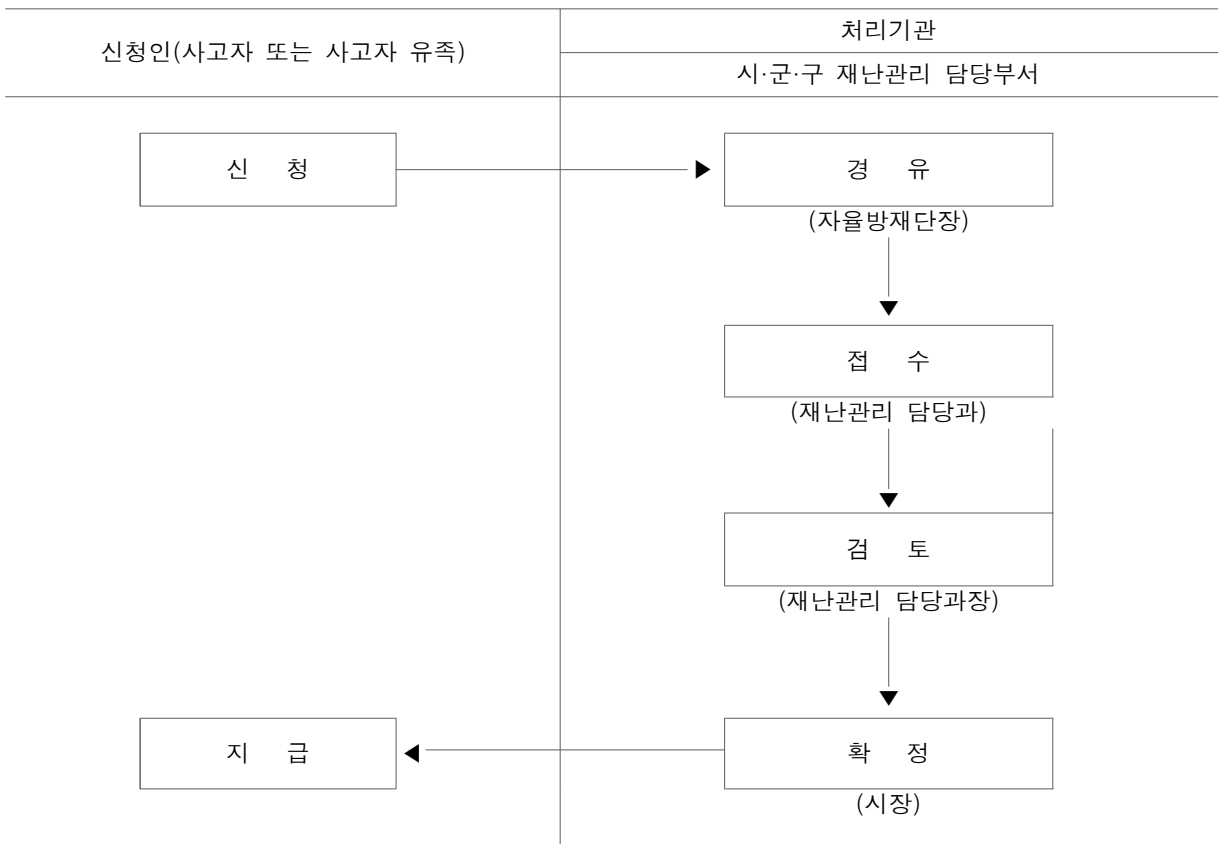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처리절차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9년 05월 03일

남원시 조례 제 1502 호

남원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

남원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귀농·귀촌 지원 조례 전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9년 05월 03일

남원시 조례 제 1503 호

**남원시 귀농·귀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원시 귀농·귀촌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남원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원시에 이주한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3. “귀농인”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지원”이란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활성화 하고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귀농인·귀촌인(이하 “귀농·귀촌인”이라 한다)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모든 행정·재정적인 지원과 활동을 말한다.

7. “임시 거주지”란 귀농·귀촌인이 주택을 마련하기 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체재형 가족실습농장”과 “게스트 하우스”를 통칭한다.

가.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 귀농·귀촌인에게 제공되는 임시 거주지로 주택과 실습 체험 농장을 말한다.

나. 게스트 하우스 :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제공되는 임시 거주지로 주택의 방을 말한다.

**제3조**(남원시 귀농·귀촌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귀농·귀촌인에게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남원시 귀농·귀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귀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정책방향 수립·심의
2.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3. 임시 거주지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촌활력과장, 농정과장, 원예산업과장, 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 의원

나. 귀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농촌·산촌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귀농·귀촌 업무담당이 되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0조(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귀촌인의 쾌적한 주거 공간 조성을 위한 전원마을 조성
2.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이사비·자녀정착금 지원
3. 귀농·귀촌하기 좋은 마을 선정 및 시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귀농·귀촌 지원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임시 거주지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귀농·귀촌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록 임시 거주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임시 거주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임시 거주지의 안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임시 거주지의 위치)** 임시 거주지는 남원시 주생면 상동리 102-2 일원에 둔다.

**제13조(임시 거주지의 입주신청)** ① 임시 거주지에 입주하려는 예비 귀농·귀촌인 및 귀농·귀촌인은 입주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사용료)** ① 제13조에 따라 임시 거주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임시 거주지 사용료를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하며, 난방, 상수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0이상으로 한다.

**제15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천재지변, 시설의 보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 거주지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은 남은 사용기간을 월할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용중단 시점이 월중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한다.

제16조(지도 감독) ① 시장은 귀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

지원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남원시 귀농·귀촌 지원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9년 05월 03일

남원시 조례 제 1504 호

남원시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친환경 농·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성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친환경미생물”이란 광합성균,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클로렐라균, 복합균 등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미생물을 말한다.
- 2. “친환경미생물 생산”이란 친환경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 3.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이하 “배양센터”라 한다)란 친환경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배양센터는 남원시 이백면 이백로 287-42에 둔다.

제4조(기능)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친환경미생물 활용·지도·연구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미생물 생산·공급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관리 및 운영)**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배양센터를 관리·운영하고 그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배양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7조(생산수급계획)** 친환경미생물 생산은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급계획에 따라 생산하여야 한다.

**제8조(공급가격)** 친환경미생물의 공급가격은 별표와 같다.

**제9조(신청 및 공급)** ① 친환경미생물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 지역 외의 자가 친환경미생물 공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시장이 공급여부를 결정한다.

③ 친환경미생물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공급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자가 친환경미생물을 판매하는 등 영리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시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

3. 제12조에 따른 신청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11조(무상공급) 시장은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 1. 시의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 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 3.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대금납부) ① 친환경미생물을 신청하려는 자는 대금을 납부하고 수령 시 납부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절차는 「남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대장비치) 배양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춰 두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1. 친환경미생물 생산대장 (별지 제2호서식)
- 2. 친환경미생물 공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
- 2. 친환경미생물 소모품 대장 (별지 제4호서식)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친환경미생물 공급 가격(제8조 관련)

구 분	균 종 류	단 위	수수료	비 고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단일균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광합성균, 클로렐라, 혼합등)	20ℓ	3,000원	
		5ℓ	1,000원	포장공급
		2ℓ	500원	포장공급
시 이외의 자	단일균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광합성균, 클로렐라, 혼합등)	20ℓ	15,000원	
		5ℓ	5,000원	포장공급
		2ℓ	2,500원	포장공급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친환경미생물 공급 신청서

- 성 명 :
- 주 소 :
- 연 락 처 : (HP : )

사용희망 영농규모	m <sup>2</sup> (전 : )											
	주 재배 작목(m <sup>2</sup> )					축산(두·수)						
	계	수도작	시설원예			과수	기타	젖소	한우	양돈	가금	기타

○ 신 청 량 :

균 종	광합성균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클로렐라균	혼합균
신청량(l)	(l)	(l)	(l)	(l)	(l)	(l)

○ 인수 희망일 :

「남원시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친환경미생물을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뒷면)

## 친환경미생물 공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친환경미생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의 동의를 구합니다.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

① 제공받는 기관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② 이용 목적	▶ 친환경미생물의 원활한 공급 및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수집 및 관리 ▶ 친환경미생물 정보 제공을 위한 SMS 발송
③ 제공 항목	▶ 필수 기재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 선택 기재항목 : 영농규모, 주작목, 미생물용도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친환경미생물 공급 신청서 제출 해당연도 포함 5년
⑤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친환경미생물 공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b>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에</b> <b>동의함</b> <input type="checkbox"/> <b>동의 하지않음</b> <input type="checkbox"/>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① 제공받는 기관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② 이용 목적	▶ 친환경미생물 정보 제공을 위한 SMS 발송
③ 제공 항목	▶ 성명, 전화번호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친환경미생물 공급 신청서 제출 해당연도 포함 5년
⑤ 귀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친환경미생물 공급에 대한 정보 제공에 제한이 있습니다.	
<b>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에</b> <b>동의함</b> <input type="checkbox"/> <b>동의 하지않음</b> <input type="checkbox"/>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친환경미생물 생산대장**





[별지 제3호서식]

## 친환경미생물 공급대장

주무관	담당	과장

연번	일시	인적사항			용도	공급량(l)							인수자 서명	
		성명	주소	전화번호		계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광합성균	클로렐라균	기타 ( 혼합 )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심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9년 05월 03일

남원시 훈령 제 401 호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심의 규정 일부개정규정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심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호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용자대상자 제한)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용자 신청을 할 경우 제한 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4. (생략)</p> <p>5. <u>창업 또는 공장등록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u></p> <p>6. ~ 8. (생략)</p>	<p>제3조(용자대상자 제한) -----</p> <p>-----</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u>&lt;삭제&gt;</u></p> <p>6. ~ 8. (현행과 같음)</p>

[별표] <개정 2015. 12. 31>

##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 평가표

### 1. 업체명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공장규모	부지면적 :                    m <sup>2</sup> , 건물면적 :                    m <sup>2</sup>		자본금	백만	
경영실태	연간매출액	백만원	판매	수출( )	내수( )
용자금용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 2. 생산품목 및 생산시설

- 업종 및 생산품목 : 업종(                    ), 생산품목 (                    )
- 시설 : 부지                    m<sup>2</sup>, 공장                    m<sup>2</sup>

3. 자산 :                    백만원(부채                    백만원)

### 4. 평가내용 --- 총 득점                    점

구분		배점	득점	구분		배점	득점
<b>합계</b>		<b>100</b>					
회사 구분	산업단지입주업체 (농공단지포함)	여	10	연 간 매 출 액	20억원 이상	15	
		부	7		20억원 미만-10억원	12	
	공장등록기업	여	10		10억 미만-5억원	8	
		부	8		5억원 미만	4	
사업 현황 및 전망	성장성 (전년대비고용증가)	유	5	자 산 규 모	10억원 이상	5	
		무	3		10억원미만 -5억원	3	
	생산성 (전년대비생산증가)	유	5		5억원 미만	2	
		무	3		부 채	자본금액 100% 이하	10
용자 여부	신규용자업체		10	자본금액 150% 이하		8	
	1회이상 용자업체		3	자본금액 150% 초과		6	
중 업 원 수	300명 이하-50명		10	기 술 및 품 질	특허, 실용신안권, 의장등록 획득	3년 이내	5
	50명 미만-30명		6			5년 이내	3
	30명 미만-10명		4			5년이상및무	1
	10명 미만		2	개 발	기술개발참여 및 품질경영업체	상	5
매출 채권 회전율	상(10 이상)		5			중	3
	하(10 미만)		3			하	1

### 5. 가 점

구 분	배점	특점	구 분	배점	특점
합 계	20				
○ 외국인 투자기업	4				
○ 최근 3년 이내 장관, 도지사 표창, 기술혁신상 수상	4		○ 신청금액		
○ 여성기업, 벤처인증기업, 유망중소기업, 선도기업, 스타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센터졸업기업, 전통산업 및 전략산업 중 식품, 화장품기업	4		1억원 미만	4	
○ 중소기업진흥공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추천업체	4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3	
			2억원 이상-3억원 미만	2	
			3억원 이상	1	

## 6. 종합평가

상기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조사평가자 : 직 성명 (인)

확 인 자 : 직 성명 (인)

### <증명서류>

- 유망중소 : 정부투자기관, 은행발굴지정증서
- 수출업체 : 수출면장 및 은행 등의 실적증명
- 포상업체 : 훈·포장(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도지사, 중소기업청장)
- 성장성, 생산성, 매출채권회전율, 매출액, 자산규모, 부채 : 재무제표  
 ※매출채권회전율 = 매출액 ÷ [(전기매출채권 + 당기매출채권) × 1/2]
- 공장등록 및 소기업 : 공장등록증 및 건축물관리대장
- 종업원수 : 최근 3개월 임금명세서
- 특허, 실용신안권, 의장등록 획득 : 인증서
- 품질인증획득 : 인증서(상: ISO품질인증시스템, 100PPM, GQ,NT,EM,CE,K마크 기술인증)
- 중: KS표시허가, Q마크, 우수디자인마크), (하:무획득)
- 기술개발참여 : 확인서(상:기술혁신개발사업,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유망선진기술및 품질경영)  
 (중:산학컨소시엄기술개발, 품질분임조등록), (하:무실적)
- 가점 : 확인서

남원시 고시 제2019-53호

###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시행 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9년 05월 03일

남 원 시 장

- 1. 사 업 명 : 개간사업
- 2. 사업목적 : 미간지를 농지로 조성하여 소득증대 기여
- 3. 사 업 비 : 자력사업
- 4. 사업내용
  - 가. 위 치 : 남원시 주천면 용궁리 20-3번지
  - 나. 사 업 량 : 4,990m<sup>2</sup>
  - 다. 사업기간 : 2019. 05. 30. ~ 2020. 04. 30.
  - 라. 사업시행자 : 남원시 주천면 주천\*\*\* 1\*\*-58, 송\*\*
-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농정과 농업시설(620-638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고시 제2019-55호

###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시행 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9년 05월 03일

남 원 시 장

- 1. 사 업 명 : 개간사업
- 2. 사업목적 : 미간지를 농지로 조성하여 소득증대 기여
- 3. 사 업 비 : 자력사업
- 4. 사업내용
  - 가. 위 치 :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산31-33
  - 나. 사 업 량 : 4,958m<sup>2</sup>
  - 다. 사업기간 : 2019. 05. 30. ~ 2020. 04. 30.
  - 라. 사업시행자 : 남원시 운봉읍 화\*\* \*\*-\* \*\*, 주\*\*
-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농정과 농업시설(620-638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고시 제2019-56호

###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시행 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9년 05월 03일

남 원 시 장

- 1. 사 업 명 : 개간사업
- 2. 사업목적 : 미간지를 농지로 조성하여 소득증대 기여
- 3. 사 업 비 : 자력사업
- 4. 사업내용
  - 가. 위 치 : 남원시 운봉읍 준향리 산48-2
  - 나. 사 업 량 : 1,091m<sup>2</sup>
  - 다. 사업기간 : 2019. 05. 30. ~ 2020. 03. 31.
  - 라. 사업시행자 : 남원시 운봉읍 운\*\* \*\*\*, 서\*\*
-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농정과 농업시설(620-638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남원시 공고 제2019 - 861호

남원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9일

남 원 시 장

## 남원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 이유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 개최에 따른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높이고자 함.

### 2. 예고기간 : 2019. 4. 29. ~ 2019. 5. 20.(20일 이상)

### 3. 주요내용

가. 학자금 이자지원 고등교육기관에 관한 정의를 개정 (안 제2조)

- ‘학교 또는 대학’의 중복되는 문구를 해당 상위법(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과 일치하게 ‘학교 또는 시설’로 교체

나.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9조)

- 1항과 3항의 불필요한 문구 교체
- 2항 삭제: 위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의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신청자 전원을 지원하며 이자 금액·시기·상환 등이 재단에서 확정되어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할 내용이 경미하므로, 정례회 소집 사항을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높이고자 함

###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5월 20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교육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교육체육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063-620-5605), FAX(063-620-6708) 및  
직접방문 등

5. 붙임 : 남원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붙임]

## 남원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9. 05. .  
 제출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교육체육과장

### 1. 개정이유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 개최에 따른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높이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학자금 이자지원 고등교육기관에 관한 정의를 개정 (안 제2조)
- 나.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9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4. . ~ 2019. 5. .(20일 이상)
    - 결 과 :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대학”을 “시설”로 한다.

제9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9조 제2항(중전의 제1항) 중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를 “위원회의 회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를 “위원장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대학을 말한다.</p> <p>3. (생 략)</p> <p>제9조(회의) &lt;신 설&gt;</p> <p>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안전을 검토한 결과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시설-----.</p> <p>3. (현행과 같음)</p> <p>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u>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u></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 ----- -----.</p> <p>&lt;삭 제&gt;</p> <p>③ 위원장은 ----- ----- ----- -----.</p>

##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견제출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고 제2019 - 902호

## 남원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 세분 및 최고고도지구)변경 결정“안”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안을 입안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 원 시 장

2019년 5월 7일

#### 1. 남원 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 세분 및 최고고도지구)변경 결정(안)

- 가. 제2종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 자연취락지구, 도시계획시설, 성장관리방안 결정(변경) 조서 및 도면(관계도서는 남원시 도시과 비치)
- 나. 입안사유 : 최고고도지구로 인한 제약사항 해소 및 미세분된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세분화를 통해 합리적인 용도지역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재검토와 비도시지역 자연취락지구를 재검토함으로써 현실여건과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여 정비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체계를 수립하고자 함.

#### 2. 공람기간 : 신문공고 익일 후 14일이상

#### 3. 공람장소 및 주민 의견서 제출처 : 남원시 도시과(063-620-6452)

#### 4. 관련도서 : 실음생략(관련도서는 남원시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5. 기타사항 : 본 공람“안”은 결정된 내용이 아니며,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